

[일련번호 : 4]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대리 발급 업무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등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법무부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권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제 제138의 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이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출입국(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대리발급 신청 총 93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미비, 위임장 미작성, 위임자 신분증명서(사본) 등 누락되었음에도 보완 요구 없이 증명서를 발급처리 하였다.(세부내역 별도 송부)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